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29
----------	-------

제출년월일 : 2003. 06.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유통매장이나 종량제 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사용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 ·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
-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추가로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
- 기존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두께보다 0.005mm 보강하여 봉투 재질이 약하여 잘 터진다는 주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 추가(안 제6조)
- 나.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21개품목 → 72개품목)(별표1)
- 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 추가(6개종류 → 11개종류)(별표2)
- 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양 변경(봉투두께 0.005mm보강)(별표3)
- 마. 쓰레기주간배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근거마련(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시 과태료부과(10만원))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다음에 “재사용봉투”를 삽입하고, 동 조 제2항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다음에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녹색”을 삽입한다

제7조제5항중 “별표4-7”다음에 “별표4-8”을 추가한다

제9조제2항중 도표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중 구분란 “일반용·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일반용·재사용·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폐기물관리법란 17호 가목중 “지정된 장소 및 용기”를“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로 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78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전 상 오
	징 소 담 당	곽 기 용
	담 당 자	김 관 진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관련)

(단위:원)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2,000	35	오디오	소형	3,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36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4,000
		높이1m이상	5,000	37	옷걸이	모든규격	1,000
4	가습기	모든규격	2,000	38	욕조	모든규격	5,000
5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4,000	39	유리(거울,관유리)	1㎡당	2,000
6	교자상	모든규격	2,000	4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7	나무묶음	직경40cm	2,000	41	이불(담요,솜이불)	장당	2,000
8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42	의자	모든규격	2,000
		300ℓ 이상	6,000	43	자전거	모든규격	2,000
		300ℓ 미만	5,000	44	장롱	120cm이상 1쪽	15,000
9	녹즙기(믹서기)	모든규격	2,000			120cm미만 1쪽	10,000
10	다림이판	모든규격	1,000	45	장식장	모든규격	5,000
11	문갑	모든규격	4,000	46	장판	5㎡당	2,000
12	물탱크(지수조)	1톤용량당	5,000	47	진기담요	3인용기준	2,000
13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48	진기밥솥	모든규격	2,000
14	박시계	소형	2,000	49	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중형	3,000	5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51	전자울겐	모든규격	5,000
15	번기	좌번기(소형)	5,000	52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양번기	10,000	53	청소기	모든규격	2,000
16	보일러	20평형미만	3,000	54	책꽂이	모든규격	2,000
		20평형이상	5,000	55	책상	양수책상	7,000
17	보일러기름탱크	모든규격	2,000			편수책상	5,000
18	보행기	모든규격	2,000	56	침대메트리스	1인용	6,000
19	복사기	모든규격	10,000			2인용	8,000
2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7	침대반침대	1인용	10,000
21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2인용	15,000
22	서랍장	5단미만	3,000	58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5단이상	5,000			3단이하	3,000
23	선풍기	모든규격	2,000	59	캐비넷	모든규격	5,000
24	세탁기	모든규격	5,000	60	컴퓨터본체	모든규격	4,000
25	쇼파	3인이상	5,000	61	컴퓨터모니터	모든규격	3,000
		2인이상	3,000	62	컴퓨터키보드	모든규격	1,000
26	수도호스	10m당	2,000	63	탈수기	모든규격	4,000
27	식탁(테이블)	6인용미만	4,000	64	텔레비전	19인치미만	4,000
		6인용이상	5,000			19인치이상	5,000
28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65	텔레비전대	모든규격	3,000
29	쌀통	모든규격	3,000	66	프린터기	소형	3,000
30	쟁크대	60cm 1쪽당	3,000			대형	4,000
31	액자	소형	1,000	67	피아노	모든규격	15,000
		대형	2,000	68	울겐	모든규격	6,000
32	이항	1m미만	3,000	69	항아리	소형	2,000
		1m이상	5,000	70	화장대	모든규격	4,000
33	에이컨	66㎡형미만	4,000	71	화분	소형	1,000
		66㎡형이상	5,000			대형	2,000
34	에어컨	264㎡형이상	8,000	72	가정배출 불연성 소량폐기물	40kg기준	6,000

※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2]

제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신문지 -책자,노트,종이,쇼핑백,달력,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류,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테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첩편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금 속 캔	-철크,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민용기보중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4. 고 천 류	-고천(공기구,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합성수지류	o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 상표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6. 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o 농촌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7. 전 지 류	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8. 타 이 어	o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9. 윤 활 유	o 윤활유	-정비업소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0. 전자제품	o TV, 냉장고,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로 배출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11. 형 광 등	o 형광등	- 폐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1. 일반용·제사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봉투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 칭 두 께(mm)	
			저 밀 도	고 밀 도
음식물쓰레기전용	3 ℓ	22×39.5	0.025	0.025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 ℓ	26×46.5	0.030	0.025
공공용,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 ℓ	33×56.5	0.030	0.025
공공용,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 ℓ	42×69.5	0.035	0.030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 ℓ	48×78.5	0.035	0.035
공공용, 일반용	50 ℓ	56×91.5	0.045	0.040
일 반 용	75 ℓ	65×103.5	0.050	0.045
공공용,일반용 가내공업용	100 ℓ	71×113.5	0.055	0.050
제 사 용	10 ℓ	36×53.5	0.025	-
	20 ℓ	45×65.3	0.030	-

2. 건설폐기물 봉투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비 고
건설폐기물용	50 ℓ	56×91	pp마대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재사용봉투 앞면문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20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디자인)

(시마크) 파주시장 (인영)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파주시청 환경보호과(940-4471~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 제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 제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 ----- ----- ----- ----- -----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사업장용쓰레기 봉투의 색깔 중 가내공업용은 적색, 건설폐기물용은 황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하며,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옅은녹색----- ----- ----- ----- ----- ----- -----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④ (생략) ⑤ 제6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용은 별표4-1, 별표4-2, 별표4-3, 별표4-4, 별표4-5, 별표4-6, <u>별표4-7</u> 과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별표4-7, 별표 4-8</u>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종	별	부과기준	부과금액(원)	비	고
방	장	500㎡이상	8,000		
		300㎡이상	6,000		
텔	러 비 전	300㎡미만	5,000		
		19인차이상	5,000		
서	탁 기	19인차미만	4,000		
			5,000		
에	어 른	264㎡형이상	8,000		
		66㎡형이상	5,000		
가	스 오 브 렌 저	66㎡형미만	4,000		
		높이1m이상	5,000		
탈	수 기	높이1m미만	4,000		
			4,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1m이상	4,000		
		120cm이상1축	15,000		
장	농	120cm미만1축	10,000		
		5단이상	5,000		
서	암 장	4단이하	3,000		
			3,000		
신	발 장		4,000		
			4,000		
문	화 장		5,000		
			5,000		
장	점 췌 트	장의자(3인이상)	3,000		
		의 자(2인이상)	3,000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6,000		
캐	비 넷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화	일 캐 비 넷		5,000		
		4단이상	4,000		
양	수 췌 상	3단이하	3,000		
			3,000		
편	수 췌 상		7,000		
			5,000		
피	아 노		15,000		
			6,000		

-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처리시설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용,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편, 드럼통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공미터(m)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처리과정에서 상분시험, 제근등을 실시하여 수밀·운반설치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별을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을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개 정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관련)

번	품 명	규 격	금 액	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2,000	35	오디오	소형	3,000
2	가스레인지대	모든규격	2,000			대형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36	오디오정식장	모든규격	4,000
4	가솔기	모든규격	5,000	37	육조	모든규격	1,000
5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4,000	38	유리(거울,편유리)	모든규격	5,000
6	교차장	모든규격	2,000	39	유도장	1㎡당	2,000
7	나무욕용	직경40cm	2,000	40	이불(담요,동이불)	장당	2,000
8	냉장고	500ℓ이상	8,000	41	책장	모든규격	2,000
9	녹음기(박서기)	300ℓ미만	5,000	42	차전거	모든규격	2,000
10	다용도기	모든규격	2,000	43	장롱	120cm이상 1축	15,000
11	문간	모든규격	1,000	44	장식장	120cm미만 1축	10,000
12	물탱크(제수조)	모든규격	4,000	45	장분	모든규격	5,000
13	배기호트	1톤용이상	5,000	46	전기담요	5㎡당	2,000
14	벽시계	모든규격	2,000	47	전기스탠드	모든규격	2,000
15	변기	소형	2,000	48	전파레인지	모든규격	2,000
16	보일러	대형	3,000	49	전파레인지	모든규격	2,000
17	보일러기통보크	축분기(소형)	5,000	50	전파레인지	모든규격	2,000
18	보통기	장분기	10,000	51	침수기	모든규격	3,000
19	비디오	20평용이상	3,000	52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0	비디오	30평용이상	5,000	53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1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4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2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5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3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6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4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7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5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8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6	비디오	모든규격	2,000	59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7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0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8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1	침수기	모든규격	2,000
29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2	침수기	모든규격	2,000
3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3	침수기	모든규격	2,000
31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4	침수기	모든규격	2,000
32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5	침수기	모든규격	2,000
33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6	침수기	모든규격	2,000
34	비디오	모든규격	2,000	67	침수기	모든규격	2,000
				68	침수기	모든규격	2,000
				69	침수기	모든규격	2,000
				70	침수기	모든규격	2,000
				71	침수기	모든규격	2,000
				72	침수기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40kg이상	6,000
					불면증치료기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반드시 퍼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포장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 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소광 백, 달력, 포장지	-비닐포장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류, 포장 지,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포장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 하면 압착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결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 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꽂이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조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
4. 고 철 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 진선, 알루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반드시 퍼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포장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 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소광 백, 달력, 포장지	-비닐포장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류, 포장 지,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비닐포장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금 속 캔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가능 하면 압착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결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꽂이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조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 서 환불
4. 고 철 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 진선, 알루미늄샷시 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현행

개정

[별표2]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폴라스티크류	-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폴라스티크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무장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입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페스티로플류	- 페스티로플	-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무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날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커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 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T, 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별표2]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합성수지류	0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0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펜상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입착하여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 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합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6. 영농폐기물류	0 농약용기 0 농촌폐비닐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푸트를 통하여 배출 - 장비업소·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푸트를 통하여 배출 - 정비업소 등 역회수 푸트를 통하여 배출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7. 전 지 류	0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8. 타 이 어	0 소형, 중형, 대형	
9. 윤 활 유	0 윤활유 0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10. 전 지 제 품		
11. 형 광 등	0 형광등	- 폐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현행

[별표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1. 일반용·재사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봉투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전용	3ℓ	22×39.5	0.025	0.02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ℓ	26×46.5	0.025	0.020
공공용,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ℓ	33×56.5	0.025	0.020
공공용,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42×69.5	0.030	0.02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ℓ	48×78.5	0.030	0.030
공공용,일반용	50ℓ	56×91.5	0.040	0.035
일반용	75ℓ	65×103.5	0.045	0.040
공공용,일반용 가내공업용	100ℓ	71×113.5	0.050	0.045

2. 건설폐기물 봉투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비고
건설폐기물용	50ℓ	56×91	pp마대

개정

[별표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1. 일반용·재사용·음식물쓰레기전용·가내공업용·공공용봉투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전용	3ℓ	22×39.5	0.025	0.02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ℓ	26×46.5	0.030	0.025
공공용,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ℓ	33×56.5	0.030	0.025
공공용,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ℓ	42×69.5	0.035	0.03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ℓ	48×78.5	0.035	0.035
공공용,일반용	50ℓ	56×91.5	0.045	0.040
일반용	75ℓ	65×103.5	0.050	0.045
공공용,일반용 가내공업용	100ℓ	71×113.5	0.055	0.050
재사용	10ℓ	36×53.5	0.025	-
	20ℓ	45×65.3	0.030	-

2. 건설폐기물 봉투

구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비고
건설폐기물용	50ℓ	56×91	pp마대

현 행

개 정

[별표7] 쓰레기종량제 규격분투 가격

구	분	용량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비 고
일반용·음식물 쓰레기 전용분투		3ℓ	70원	65원	5원	
		5ℓ	100원	92원	8원	
		10ℓ	200원	185원	15원	
		20ℓ	400원	370원	30원	
		30ℓ	600원	555원	45원	
		50ℓ	1,000원	925원	75원	
건설폐기물용분투		75ℓ	1,500원	1,387원	113원	
		100ℓ	2,000원	1,850원	150원	
가내공업용분투		50ℓ	2,500원	2,305원	195원	
		100ℓ	3,000원	2,770원	230원	

[별표7] 쓰레기종량제 규격분투 가격

구	분	용량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비 고
일반용·제사용·음식물 쓰레기 전용분투		3ℓ	70원	65원	5원	
		5ℓ	100원	92원	8원	
		10ℓ	200원	185원	15원	
		20ℓ	400원	370원	30원	
		30ℓ	600원	555원	45원	
		50ℓ	1,000원	925원	75원	
건설폐기물용분투		75ℓ	1,500원	1,387원	113원	
		100ℓ	2,000원	1,850원	150원	
가내공업용분투		50ℓ	2,500원	2,305원	195원	
		100ℓ	3,000원	2,770원	230원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다.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조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44조의 2 폐기물 재사용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	70	100
	15. 정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법제7조제3항)	30	70	100
	16.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 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 니한 자(법제15조제1항)	10	20	50
	17.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 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제15 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시에서 지 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에 배 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10	20
	18.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설 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제25조 의5제1항)	100	100	100
	1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0조제4항)	200	100	100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다.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 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조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44조의 2 폐기물 재사용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	70	100
	15. 정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법제7조제3항)	30	70	100
	16.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 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 니한 자(법제15조제1항)	10	20	50
	17.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 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제15 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시에서 지 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시간 및 용기에 배 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10	20
	18.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설 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제25조 의5제1항)	100	100	100
	1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30조제4항)	300	100	100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3년 6월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유통매장이나 종량제 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사용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
-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추가로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
- 기존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두께보다 0.005mm를 보강하여 봉투 재질이 약하여 잘 터진다는 주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 추가(안 제6조)

나.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 [21개품목 →72개품목] (별표1)

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 추가 [6개종류→11개종류] (별표2)

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양 변경 [봉투두께 0.005mm보강]
(별표3)

마. 쓰레기주간배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근거마련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시 과태료부과(10만원)]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지침에 근거하여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활용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 확대와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한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두께를 보강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외에도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재사용봉투의 색깔을 옅은 녹색으로 제작하여 일반봉투와 구별되도록 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유통매장이나 종량제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활용토록 하여 점차적으로 1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한 조치로 환경보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7조제5항 중 “별표 4-8”을 추가하여 재사용봉투의 제작 사양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2항의 도표는 “별표7”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임.

○ 별지의 “별표1”은 안 제9조와 관련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21개 품목에서 7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각각 정하여 그간 대형폐기물 처리 시 품목간 수수료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별표2”에서는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을 기존 6개 품목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출요령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별표3”에서는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기존 쓰레기종량제봉투보다 0.005mm를 보강하여 봉투재질이 약해 잘 터진다는 주민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로 보임.
- “별표7”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중 구분란에 “재사용봉투”를 새로 삽입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중 “별표1” 제17호 가목에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새로 명시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환경부지침에 근거하여 재사용봉투의 활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나가면서 대형폐기물처리 등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그동안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